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15474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615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15474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 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2,810원 및 그 중 4,871,254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842,5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에게, (1) 2004. 6. 11. 변제기를 2005. 5. 11.로 정하여 500만 원을, (2) 2005. 3. 10. 변제기를 2006. 2. 20.로 정하여 500만 원을, (3) 2005. 4. 20. 변제기를 2005. 7. 20.로 정하여 1,000만 원을, (4) 2005. 4. 22. 변제기를 2005. 12. 22.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까지는 월 3%(연 36%), 위 시행일 이후로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주채무자 C는 2004. 7. 12.부터 아래 (3)항과 같이 합계 277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4)항의 계산과 같이 95,842,500원이 된다.

(1) 2007. 6. 30. 이전 발생 이자(연 36%): 합계 22,050,000원

500만 원	2004. 6. 11. ~ 2005. 3. 11.	9개월	15만 원	135만 원
1,000만 원	2005. 4. 10. ~ 2005. 5. 11.	2개월	30만 원	60만 원
2,000만 원	2005. 5. 20. ~ 2005. 5. 20.	1개월	60만 원	60만 원
2,500만 원	2005. 5. 22. ~ 2007. 6. 22.	26개월	75만 원	1,950만 원

(2) 2007. 6. 30. 이후 발생 이자(연 25%): 원금 2,500만 원에 대한 2007. 7. 22.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9. 22.까지 8년 3개월(99개월) 간의 이자 51,562,500원

[= 2,500만 원×{(25%×8년)+(25%×3/12)}]

(3) C가 변제한 금액: 합계 277만 원(= 2004. 7. 12.자 15만 원+2004. 8. 9.자 15만 원+2004. 9. 10.자 15만 원+2004. 11. 12.자 15만 원+2004. 12. 13.자 15만 원+2005. 4. 12.자 8만 원+2005. 4. 12.자 15만 원+2005. 6. 10.자 15만 원+2005. 8. 25.자 45만 원+2005. 7. 19.자 15만 원+2005. 7. 26.자 50만 원+2005. 9. 10.자 15만 원+2005. 11. 15.자 30만 원+2015. 7. 14.자 4만 원+2015. 7. 16.자 2만 원+2015. 7. 27.자 3만 원)

(4) 이자 합계액 73,612,000원[= (1)항 22,050,000원+(2)항 51,562,500원]에서 변제금액 2,770,000원을 이자 변제에 충당하면 미변제 이자는 70,842,000원(= 73,612,000원-2,770,000원)이 되므로, 대여금 원금 25,000,000원과 미변제 이자 70,842,000원을 합산한 총 미변제 원리금은 95,842,500원(= 25,000,000원 + 70,842,000원)이다.

2. 판단

가. 2004. 6. 11.자 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

C가 2004. 6. 1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C의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매달 11일에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는 원고가 C에게 "차용증을 분실하여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에 의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435조에 의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5. 3. 10.자 500만 원, 2005. 4. 20.자 1,000만 원, 2005. 4. 22.자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

나아가 피고가 2004. 6. 11.자 이 사건 차용금 외에 C의 원고에 대한 2005. 3. 10.자 500만 원, 2005. 4. 20.자 1,000만 원, 2005. 4. 22.자 5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각 지불각서)에는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일금 오백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함",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B이 지불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¹⁾,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상당액인 15만원(= 500만 원×3%)을 넘는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갑 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4. 12.경부터 C와 별개로 원고에 대해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증인 C가 '이 사건 차용금 500만 원 외에 다른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갑 1호증의 1) 외의 다른 차용증(갑 1호증의 1 내지 4)은 실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잃어버렸다면서 다시 써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증언한 내용은 믿을 수 없고 피고도 C가 운영한 사업에 관여되어 있었으므로, 보증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17. 8. 9.자 참고서면), 설령 C가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보증사실까지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C가 변제한 합계 2,770,000원이 위 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원금에 위 변제금액을 변제충당하면 그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612,810원(= 원금 4,871,254원+이자 등 11,741,556원)과 그 중 4,871,254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허경호

별지

1) 원고는 '피고가 그 주장대로 1번만 보증하였다면 갑 2호증의 1과 별도로 갑 2호증의 2를 재차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갑 2호증의 2 지불각서에 채무금액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작성 시까지 아직 C에게 대여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고, C를 믿을 수 없어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놓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달리 판단할 수 없다.